



WMD



제1부 WMD 군축 및 비확산

- 제1장 / UN의 WMD 군축 및 비확산 활동
- 제2장 /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협력

● 제1장 ●

UN의 WMD 군축 및 비확산 활동



WMD의 정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란 핵무기, 화학무기 및 이의 운반 수단인 미사일 등 짧은 시간에 대량의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의미한다. 군사적으로는 ABC(Atomic, Biological, and Chemical), NBC(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WMD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UN(유엔 군축연구소/재래식 군축위원회)
핵폭발무기, 방사능무기, 치명적인 화학·세균무기 및 이와 비슷한 파괴 효과를 갖는 미래의 무기.
- 미 합참 군사용어사전
대량의 인명을 파괴하는 수단 또는 파괴 능력을 가진 무기를 말함. 고성능 폭탄, 핵·생물·화학·방사능 무기 등이 있음. 그러나 수송 수단이나 분리 가능한 추진 수단은 포함되지 않음.
-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핵·화학·생물학 무기 등처럼 대량살상 및 파괴를 유발하는 무기의 총칭.

WMD는 다음과 같은 특성에서 재래식무기와 구별된다.

첫째, 치명적 살상력이다. 핵무기의 경우 동일 중량의 재래식 폭탄과 비교하여 100만 배 이상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핵폭발 이후의 방사선에 의한 피해까지 고려하면 그 살상력은 더욱 증대된다.

둘째, 쓰임의 양면성이다. WMD는 일상생활에서 평화적으로 쓰이는 것과 동일한 원료로 만들어진다. 핵무기의 원료는 원자력발전에서 쓰이는 핵 연료주기에서 얻는다. 또 화학무기의 원료들은 비료, 살균제, 살충제, 의약품 등의 원료와 동일하다. 생물무기는 백신이나 의약품의 제



조 과정을 변형시켜 만들 수 있고, 미사일 추진체나 유도장치에 적용되는 기술은 통신위성 및 인공위성을 운용할 때 쓰이는 그것과 같다.

셋째, WMD는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술무기가 전장 내의 목표를 파괴하거나 근접 작전을 수행·지원하는 무기체계인 데 비하여 WMD는 장거리의 대규모 표적 또는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넷째, WMD는 상대적으로 획득비용이 저렴하다. 대략 1km² 안에 있는 인원을 살상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용은 재래식무기의 획득비용을 100으로 보았을 때 핵무기는 50~60 정도이고, 화학무기는 10~20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군축과 비확산 정의

군축이란 ‘군비경쟁의 종식을 목적으로 군비의 감축(reduction) 또는 폐기(elimination)와 관련된 제반 조치’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 국가의 군사적 능력을 삭감함으로써 무력이 사용될 수 있는 군사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적어도 감소시키는 것’에 있다.

군축을 의미하는 Disarmament는 원래 무장해제란 뜻으로, 군사력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새로운 전쟁을 방지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국제연맹을 통해 이상주의적인 완전무장해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자국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각국의 군비 증강을 억제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각국의 군비증강은 무제한의 군비경쟁을 유발하였다. 그리고 그같은 이상주의로는 세계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확인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군축보다는 군비통제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무기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이상주의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결과다. 그보다는 신중하고 세심하며 차분한 연구와 고도의 기술적 협상으로 관련 국가간의 상호 협력하에 군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일이 좀더 현실적임을 깨달은 것. 즉 군비통제는 상호 정치적 신뢰 구축부터 시작하여 군비축소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고려가 반영된 조치다.

군비통제(Arms control)

- 군비 감축 내지 축소(Arms reduction)
- 군비제한(Arms limitation)
- 군축 또는 무장해제(Disarmament)
- 군비관리(Arms management)
- 신뢰구축(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 군비동결(Arms freeze)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그러나 군비통제는 군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나 상위 개념은 아니다. 오늘날 UN에서도 군비통제와 군축이 상호 호환적이며 보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이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정의의 공통적인 요소를 도출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군비통제(Arms control) : 일방·쌍방·다자 등 관련 국가들이 서로 협의하여 특정 군사력의 건설·배치·이전·운용·사용을 확인하거나 제한·금지·축소를 통하여 군사적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전쟁 위험을 감소시켜 안보를 증진하려는 전략 개념.

군축(Disarmament) : 현존 군사력(병력과 장비 등)을 일정 수준 또는 가능한 한 최저 수준까지 감축·폐기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면적이고 완전한 축소를 추구하는 군비통제의 한 형태. ‘국가간 절대 우위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군비경쟁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인식하에 ‘근본적으로 군비(무기)를 제거해야 전쟁의 위험이 감소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이상주의적 접근 방법.

특히 최근 국제사회는 군비통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대응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즉 WMD 확산과 그것의 사용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테러와 특정 재래식무기의 비인도적 사용 가능성 등이 세계평화의 새로운 위협 요소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러한 무기가 수평적(양적) 또는 수직적(질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비확산이라고 한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비확산 활동을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시하고, 이를 국가 위상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는 일부 불량국가의 WMD 획득을 막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9·11테러 이후 불량국가와 테러단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강경 대응 개념을 주장하였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었다. 이처럼 적극적 차단 개념을 포함하는 새로운 확산 방지 노력이 대확산이다.

확산방지정책 용어 및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확산 non prolif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MD의 수평적(양적), 수직적(질적) 확산 방지활동. (개발, 생산, 비축, 배치, 사용 이전 등) • 외교적 협상과 활동을 통해 목표 달성 추구. (조약, 협약, 국제적 레짐 등)
대확산 counter prolif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확산을 보완하며 적극적·공세적으로 WMD 위협에 대처하는 활동. • WMD의 확산 방지활동뿐만 아니라 실질적 위협을 감소 혹은 제거하고 적의 사용 의지를 억제. • 자국 영토와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전력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정책.
사후관리 Consequence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의 WMD 공격 시 이로 인한 피해와 결과에 대처하고, 우방국과 동맹국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 조치. • 비확산의 ‘거부와 통제’, 대확산의 ‘징계와 제재’에 작전 복구 능력 등을 사전 준비하여 확산의 동기와 사용 의지를 원천 봉쇄하려는 체계적인 대책.



WMD 확산 실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은 세계 안보환경을 악화시키고 국가간 갈등을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권력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테러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가 WMD를 사용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국제사회의 커다란 위협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핵무기는 무차별 대량살상과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 등 파괴력이 엄청나 국제사회에서 개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2002년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서 보듯이 ‘핵 보유가 안전보장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강대국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인식 속에서 관련기술이 발달하고 개발욕구도 증대하고 있다.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6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를 보유하고 실험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5개국만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 이외에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북한, 알제리 등이 핵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 내 핵물질 관리체계가 약화되면서 관련기술 종사자가 테러단체에 매수되고, 이들 테러단체에 의한 핵무기 및 핵물질(방사성물질 등)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화학·생물무기는 1925년 제네바의정서에 따라 전쟁 수단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후 화학무기금지조약(CWC), 생물무기금지조약(BWC)에서도 개발·생산·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생산비용이 낮고, 제조 기술 습득이 용이하며, 사전 적발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전쟁이나 테러 시 사용 가능성은 핵무기보다 훨씬 높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영국·프랑스 등에 의해 화학무기가 대량으로 사용되었으며,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도 화학무기가 사용된 전례가 있다.

약 20개국이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유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더욱이 생물무기프로그램은 비밀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쉬워 보유국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미국 과학자협회는 25개국이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제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181개국이 가입한 화학무기협약은 회원국에 2007년까지 모든 화학무기와 그 생산시설을 폐기할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1995년 일본 옴 진리교에 의한 도쿄 지하철역 사린(sarin)가스 살포 사건,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탄저균 우편물 사건, 그리고 2004년 영국의 리신 우편물 사건이 보여주듯 화학·생물무기를 이용한 테러 위협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사일은 핵·화학·생물 무기 등 WMD 운반수단으로 사용되는데 속도가 워낙 빨라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 이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국가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며, 무력분쟁이나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 분쟁을 격화시키고 불안정을 초래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32개국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도미사일 보유 추정국(몬테레이연구소, 2006년)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바레인, 벨로루시, 불가리아, 중국, 이집트, 프랑스, 그루지야, 그리스,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리비아,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한국, 시리아, 대만,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베트남, 예멘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은 경쟁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며 정밀도와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수백기의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은 이란·파키스탄 등에 노동 미사일을 제공했으며, 중국은 미사일 관련 예산을 증대하고 서아시아·중동국가에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술, 지식, 정보 등의 보편화에 따라 기존 미사일 수입국들이 점차 수출국으로 전환되면서 미사일 확산이 세계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한편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더하여 상대적으로 국제 수출통제체제가 느슨하고 은닉이 용이한 순항 미사일이 테러단체들에 의해 사용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UN의 군축 관련 주요 조직 및 성과

군축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는 UN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무기 문제에서부터 군축과 발전, 테러리즘, 성(gender)과 군축, 어린이와 군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군축·비확산 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 양자적·다자적·지역적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조약의 이행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UN은 총회(본회의, 군축특별총회, 총회 산하 제1위원회), 안전보장이사회, 군축위원회(DC: Disarmament Commission), 군축국(Department of Disarmament Affairs),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군축문제연구소(UNIDIR) 등을 두고 군축·비확산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UN 총회

총회는 헌장 제11조에 근거하여 군축과 군비규제(disarmament and the regulation of armaments) 원칙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협력의 일반원칙을 검토하고, 이를 회원국과 안보리에 건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매년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개최되는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은 공식적으로 자국의 군축·비확산 정책을 연설할 기회를 가지며, 회원국들과 의제를 형성하고 결의안·성명서·제안 등을 채택하여 군축의 방향을 제시한다. 군축과 안보에 관한 문제는 총회 산하 6개 위원회 중 하나인 제1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되는데, 매년 50여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한다. 이들 대부분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된다.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군축의 기틀을 마련한 대표적 결의로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결의(1946년),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결의(1959년), 핵무기 이전과 획득 금지 결의(1961년), 해저·해반의 평화적 이용 결의(1969년) 등이 있다.

● UN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회에서 무장을 규제하는 기구로, 헌장 제26조는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사참모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군비규제(the regulation of armaments) 수립방안을 강구하여 회원국에 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축 관련 조약이나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경우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 군축조약인 NPT, CWC, CTBT 등은 중대한 의무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를 안보리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는 UN 설립 초기 군축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비해서 1950년대 이후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그 역할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비핵국가들이 핵무기 위협이나 침략을 받을 때 지원을 제공한다는 적극적 안전보장 결의 채택(1968년), 이라크 WMD를 검증·폐기하기 위한 UN특별위원회(UNSCOM) 설치(1991년), 핵 국가들이 핵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 결의 채택(1995년) 등 군축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 유엔총회 제1위원회

유엔 총회 산하 6개 위원회 중 하나인 제1위원회는 유엔 총회 개최 전 WMD, 재래식무기, 외기권 군비경쟁금지, 군비투명성 등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며 주요 업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설립 승인(1954년), 핵비확산조약(NPT) 채택(1968년) 등을 들 수 있다.

● UN 군축위원회(DC)

1952년에 조직된 군축위원회는 1978년 UN 군축특별총회의 결의에 따라 군축 분야에 대한 심의와 토의 기구로 재가동되었다. 모든 UN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회 산하기구로, 매년 5월 약 3주간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비핵지대, 실질적 군축, 비핵화 방법과 수단, 재래식무기 분야의 실재적 신뢰구축 방안 등의 의제에 대해 토의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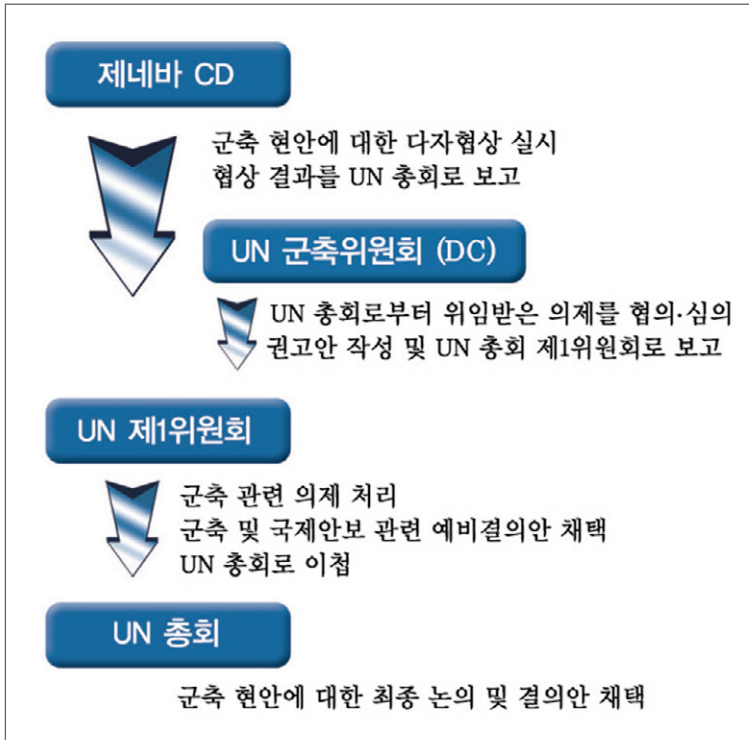
● 제네바 군축회의(제네바CD)

1978년 제1차 UN 군축특별총회의 결정에 따라 1979년 제네바에 설치된 다자간 군축협상기구로, 2006년 현재 65개 회원국이 있다. UN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UN 정규예산으로 운영되며, UN 총

제1장 UN의 WMD 군축 및 비확산 활동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군축 협상 및 의사결정 체계



회의 권고를 활동에 참고하고 총회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UN 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직은 사무총장·사무차장·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는데, UN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무총장은 제네바 군축 회의에서 UN 사무총장을 대신한다. 회의는 연중 6개월간 회기로 개최하며 본회의, 특별위원회, 특별작업반, 의장단협의회 등에서 군축·비확산 분야 의제를 논의한다.

군축회의는 모든 다자간 군비통제와 군축 문제를 다룬다. 현재는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 군축, 핵전쟁 방지,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불사용 보장, 새로운 형태의

WMD 개발 금지, 포괄적 군축 계획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축회의의 주도로 1963년 부분핵실험금지조약(PTBT), 1967년 외기권조약(Outer Space Treaty), 1968년 핵비확산조약(NPT), 1971년 해저무기금지조약(Sea-bed Treaty), 1972년 생물무기금지조약(BWC), 1993년 화학무기금지조약(CWC), 1996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의 주요 국제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이후 핵무기 군축, 핵물질 생산 금지 조약, 외기권 군사화 방지 등의 핵심 의제에 대한 입장 대립으로 공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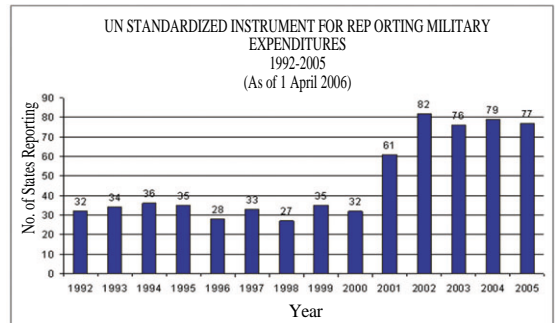
UN의 군비투명성 제도

UN은 국가간 군비(軍備) 투명성 보장을 위해 총회 결의에 따라 군사비지출보고제도(Instrument for Reporting Military Expenditures)와 재래식무기등록제도(Register of Conventional Arms)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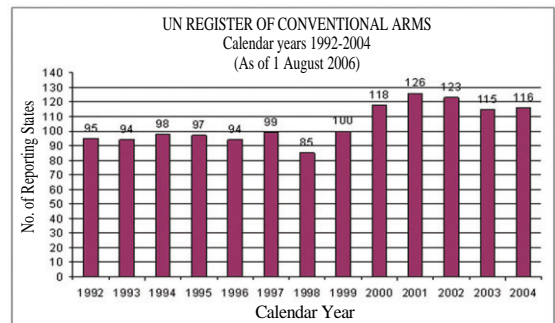
군사비지출보고제도는 ‘국가간 군사비를 비교하여 군비경쟁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매년 군사비 지출 현황을 UN에 보고하는 제도다. 1980년 12월 12일 제35차 UN 총회 결의(Reduction of military budgets)에 따라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력, 운영유지, 획득 및 건축, 연구·개발비를 군별로 분류하여 UN의 표준화된 양식에 맞춰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110개국 이상이 최소한 한 번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1980년부터 1990년까지는 보고서 제출 국가가 평균 30개국 이하였으나 2002년 가장 많은 82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많은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재래식무기등록제도는 재래식무기의 수출입 실적 및 보유 현황, 국내 생산을 통한 조달 현황, 정책 수립 동향 등에 관한 배경 설명서를 UN에 등록하는 것으로 무기 이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91년 12월 6일 제46차 UN 총회 결의(Transparency in armaments)에 따라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대상 무기는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발사대 등 7종이다. 지금까지 총 170개국이 한 번 이상 등록하였고, 2004년에는 116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의 두 제도는 군사적 투명성과 개방성 증대를 통한 국가간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국이 배경 설명서 등의 작성 없이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출하고, 제출 내용에 대한 검증 제도도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이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UN 군사비 지출보고서 제출 현황 (2006년 4월 1일 현재)



UN 재래식무기등록보고서 제출 현황 (2006년 8월 1일 현재)



UN의 대테러 활동

UN의 대테러 활동은 UN 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행동)에 기반을 두고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 등 주요 조직에서 다루고 있으며, 테러 관련 결의나 조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테러 방지를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총회는 테러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1972년 국제테러리즘 임시 위원회를 설치하여 테러리즘의 원인과 그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1994년에는 모든 테러 활동과 관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국제테러리즘 제거 방안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면서 국가·국제적 수준에서의 테러리즘 제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어 2006년 9월 8일에는 ‘국제 대테러 전략 결의’를 채택했다. 이 결의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테러 관련 UN 협약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보리의 대테러 관련 활동은 1267위원회, 대테러위원회, 1540위원회, 1566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중 1267위원회는 1999년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제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2001년 안보리 결의 1373호 채택과 함께 설치된 대테러위원회는 각국의 대테러 조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1540위원회는 2004년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WMD 및 운반수단 접근 차단조치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 1540호의 이행을 위해 설치되었다. 또 같은 해 알카에다와 탈레반 연관 단체 이외의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방안을 마련하는 안보리 결의 1566호가 채택되면서 1566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UN 군축국이 총회의 대테러 전략과 안보리 1540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등 군축·비확산 차원에서의 대테러 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이사회는 주로 인권 측면에서 테러 문제를 다루고 있다.

UN 대테러 주요 협약

-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도쿄, 1963년)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헤이그, 1970년)
- 민간 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협약(몬트리올, 1971년)
-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뉴욕, 1973년)
-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빈, 1980년)
- 국제 민간공항에서의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몬트리올, 1988년)
-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억제 의정서(로마, 1988년)

UN 안보리 결의안 1540호

2004년 4월 28일 UN 안보리는 ‘테러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WMD 확산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안보리 결의안 1540호(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2001년 9월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WTC) 등이 테러 공격을 받은 후 국제사회가 테러단체 등 비국가 행위자를 국제사회의 위협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테러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이 결의는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3년 UN 총회에서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 후 미국의 초안을 토대로 UN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 행위에 대한 행동)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WMD 관련 물자와 비국가 행위자 통제에 대해 포괄적이면서 국제적인 토대를 마련한 안보리 결

UN 안보리 결의안 1540호 요지

■ 전문

안보리는 WMD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됨을 확인하고, 국제 테러리즘과의 연계 위협을 심각히 우려함.

국제 안보에 대한 도전과 위협에 대해 범세계적 대응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의 협조가 필요함.

■ 본문

- WMD와 그 운반수단의 개발·획득·운송·이전·사용 등을 시도하는 비국가 행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자제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청함.
- 비국가 행위자의 상기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내 통제 조치(국경통제, 법 집행, 효과적 수출통제 등)를 채택·시행할 것을 모든 국가에 요청함.
- 모든 국가는 WMD 확산 방지를 목표로 하는 다자협약을 강화하고, 채택·이행할 것을 요청함.
- WMD와 민감물질의 불법 방지를 위해 모든 국가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협력할 것을 요청함.
- 결의안 시행과 관련하여 안보상임위원회(Committee of the Security Council)를 구성하여 결의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든 국가는 6개월 이내에 자신들이 취한 조치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제1장 UN의 WMD 군축 및 비확산 활동



1차 국가보고서 지역별 제출 현황, 2006년 현재

총 UN 회원국	동구권	서구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69%	100%	96.4%	76.4%	69.7%	34%

의 1540호는 개별 또는 국가간 WMD 확산 방지를 위해 이전행위만을 통제하는 기존 다자간 수출 통제체제와 뚜렷이 차별화된다. 기존 조치들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 안보상임위원회(안보리 1540위원회)를 구성해 유엔 회원국 모두가 결의안에 따라 자국이 취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자발적 이행 체제에 불과하던 수출통제체제에 국내 법과 국제법의 성격을 가미했다. 이렇게 강화된 규제를 바탕으로 각국이 좀더 효율적인 WMD 통제를 위해 관련 법령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안보리 1540위원회는 2년의 활동 기한을 갖고 구성되었으나, 2006년 4월 27일 안보리결의 1673호의 채택으로 2008년 4월 27일까지 활동시한이 연장되었다. 유엔 군축국과 공동으로 이행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IAEA, OPCW, CTBTO 등 여타 군축 안보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각도로 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2006년 12월 현재 132개국이 안보리 1540위원회에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그중 85개국이 2차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안보리 결의 1540호는 새로운 국제수출통제규범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UN 안보리 회의장

WMD 비확산 국내입법

모든 국가는 국제적 협약에 가입하거나 결의를 채택하면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UN 안보리 결의안 1540호의 국내 이행수단으로 ‘대외무역법’과 ‘화학무기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무기금지법)’을 개정하였다.

대외무역법은 WMD 확산 방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불법행위 처벌의 법제화를 목적으로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전략물자 수출입 허가 및 협조 등을 명시한 이 법률은 전략물자의 공고 및 수출허가·확인 의무, 제조·수입자의 신고 및 통보 의무, 수입목적 확인서의 발급, 이동중지명령, 중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협의회 설치 등의 세부 내용을 2006년 12월에 개정하였다.

화학무기금지법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의무이행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UN 안보리 결의안 1540호가 채택된 이후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이행사항과 WMD 운반수단의 사용금지 규정을 포함, 2006년 4월에 개정하였다. ‘화학·생물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화학무기금지법)로 이름이 바뀐 개정 법률에는 생물무기에 관한 용어 정의, 신고 및 검사제도, 금지사항, 수출입 규제 등과 함께 미사일 등이 화학·생물무기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제2의정서 이행을 위해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2001년 5월에 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

2006년 7월 5일 북한은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이에 UN 안보리는 미사일 관련 물자·기술·자금 등의 북한 이전에 대한 경계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의안 1695호를 같은 달 15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 요지

■ 전문

안보리는 안보리 결의안 825호와 안보리 결의안 1540호를 재확인하며, WMD와 그 운송수단의 확산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탄도미사일체계가 WMD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유지 공약을 위반한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함.

■ 본문

- 2006년 7월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행위를 규탄함.
-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기존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공약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함.
-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자 등이 북한의 미사일 또는 WMD 관련 프로그램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할 것을 요청함.
-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자를 조달하거나 북한 미사일 또는 WMD 프로그램에 재원이 이전되지 않도록 모든 회원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되게 주의를 기울이고 방지할 것을 요청함.
- 북한의 긴장고조 행동 자제 및 비확산 우려 해소 필요성을 강조함.
- 전제조건 없이 6자 회담에 즉시 복귀하고, 2005년 9월 19일의 공동성명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며,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한편 NPT와 IAEA 안전조치에 조기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함.

미국과 일본이 제출한 초기 결의안에는 ‘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현장 7장을 원용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한 중국·러시아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현장 7장의 원용은 삭제되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1695호의 채택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10일 만에 나온 신속한 결의로, 북한에 국제사회의 엄중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UN 안보리 결의안 1695호는 채택 과정에서 미·일이 제기한 조치 ‘결정’ 문안이 삭제되고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의무나 제재위원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는 등 구속력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중요시 되었다. 하지만 북한 국적의 회사와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및 북한의 해외 불법 금융 거래망 해체를 비롯해 미·일의 대북 압력공조 등 실질적 대북 압박 조치도 강화되었다.

우리 정부 역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하여 쌀과 비료의 추가 제공을 중지하였으며, 기존의 전략물자수출시스템을 강화하여 국제기준에 맞춰 이중 용도 품목의 대북 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결의가 채택된 후에도 “미사일 발사는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UN 안보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며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9일 핵 실험을 단행하였다.



UN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

2006년 10월 3일 북한은 핵 실험 의지를 발표한 후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는 안보리 의장 성명(2006년 10월 6일)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 핵 실험을 단행하였다.

이에 UN 안보리는 일련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은 핵실험을 규탄하며, 2006년 10월 14일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강제행동)에 따라 대북 제재 조치 관련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였다.

UN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요지

■ 전문

핵·화학·생물 무기 및 그 운송 수단의 확산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됨을 확인함.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북한의 NPT 탈퇴 선언, 핵무기 추구, 6자회담 복귀 거부를 개탄하며 2005년 9월 19일의 공동성명 내용을 지지함.

■ 본문

-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이후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함.
- 북한은 NPT 탈퇴 선언을 철회하고 NPT와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요구함.
- 북한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현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함을 결정함.
- 모든 회원국은 재래식무기, WMD 관련 물자 및 자금, 사치품 등의 대북 이전을 방지함. 이에 따라 자국 영토를 통하거나 자국민 선박·항공기에 의한 조달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정책을 지원하는 개인·가족의 자국 영토 입국이나 경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8항 제재 조치).
- 모든 회원국은 30일 이내에 효과적 제재 이행 조치를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함.

안보리 결의안 1718호는 북한에 현존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회원국에 결의안 채택 후 최초 30일 이내, 최소 90일 단위로 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결의에 따라 북한 수출입 금지 품목 리스트 작성, 유엔 회원국의 제재안 이행보고서 검토 및 추가조치 협의 등을 임무로 하는 제재위원회가 설치되어 2006년 10월 23일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1차 보고서 제출기한인 2006년 11월 14일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5개국이 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제2장 ●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협력


 수출통제

오늘날 ‘전략물자 수출통제’ 또는 ‘비확산 수출통제’로 더 많이 알려진 ‘수출통제’는 과거 대량 살상무기(WMD) 비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전시 또는 냉전체제하에서 적국 내지는 적성국에 군수품 수출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개념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탈리아 등의 유럽 교전국과 일본 등에 수출통제가 이뤄졌다.

이후 미·소 냉전구도하에서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군수물자를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선진국들은 군사기술과 무기가 공산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49년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를 설립하였다. COCOM은 최초의 국제수출통제체제로 ‘전략물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수출통제’에 WMD 비확산의 개념이 추가된 것은 1940년 미국 의회가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 있는 물자와 기술’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PL 703-6)을 통과시킨 것이 최초였다. 또 미국의 최초 핵무기 개발을 시작으로 핵비확산과 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의 비확산이 국제적 이슈가 되자 ‘수출통제’는 ‘비확산 수출통제’로 통용되었다.

이처럼 수출통제의 개념과 대상은 시대에 따라 변화·발전되었다. 서방선진국 주도로 공산권이나 적성국에 전략물자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수출통제’ 개념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WMD나 관련 무기류·기술 등이 우려 국가와 테러집단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차단하는 ‘비확산 수출통제’로 변화되었다. 이로써 규제대상 국가가 공산권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었으며, 확산을 방지하는 대상물품은 무기류 및 군사기술에서 WMD 및 이중용도 품목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제2장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협력



다자간 비확산 수출통제체제로는 1974년에 발족한 최초의 핵 비확산 수출통제체제인 쟁거위원회 (ZC), 1978년에 만들어진 핵비확산 수출통제체제인 핵공급국그룹(NSG), 1985년에 출범한 생화학 무기 비확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 1987년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1996년에 COCOM을 대체하여 신설된 재래식무기 비확산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협정(WA) 등이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종류 및 특징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전략물자와 기술이 대량살상무기(WMD)의 제조 및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개념이다. 이 용어는 대공산권 수출통제를 담당하다가 1994년에 폐지된 COCOM(Coordinati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s)이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물품을 흔히 전략물자(strategic item)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으며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핵, 화학 및 생물, 미사일, 재래식 등 무기별로 나뉘어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국제협약이나 조약의 이행을 보장한다. 그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국가안보를 위해할 우려가 있는 물자가 테러집단이나 비국가단체 등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에 있다. 이는 국제 공급망 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WMD와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 방지하는 반면에 합법적인 무역은 촉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2007년 1월 현재

구 분		내 용	
대 량 살 상 무 기	핵무기	쟁거위원회(원자력 비확산체제) (ZC : Zangger Committe) · 설립 : 1974년(한국 가입 : 1995년)	· 회원국 : 36개국
		핵공급국그룹(원자력 비확산체제)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 설립 : 1978년(한국 가입 : 1995년)	· 회원국 : 45개국
	화학 및 생물무기	호주그룹(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AG : Austrailia Group) · 설립 : 1985년(한국 가입 : 1997년)	· 회원국 : 40개국
	미사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 설립 : 1987년(한국 가입 : 2001년)	· 회원국 : 34개국
재래식무기	바세나르협정(WA : Wassenaar Arrangement) · 설립 : 1996년(한국 가입 : 1996년)	· 회원국 : 40개국	

제2장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협력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비공식 협의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
- ② 각국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국의 법령에 구체적인 통제 품목과 지역,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 ③ 회원국 간 정보교환 시스템을 운용하여 다른 국가의 수출통제를 지원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통제는 아래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 ① 국내의 수출통제 법령에 명시한 통제 리스트상의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권이 있는 정부기관에 사전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법.
- ② WMD 개발 및 생산에 기여하는 구체적 활동을 명시하고, 이 활동과 관련된 모든 수출이나 이전 및 교육을 금지하는 방법.
- ③ WMD의 제조 및 생산을 기도할 우려가 있는 특정 국가나 단체·기업 등을 우려국가(집단)로 분류하여 이들에 대한 수출 및 이전을 금지하는 방법.

주요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단으로는 Catch-all 통제와 No-undercut 통제가 있다.

- ‘Catch-all’ 통제는 실제 기술발전과 통제 품목 개정 사이에 존재하는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출품목이 국제 수출통제체제 통제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WMD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을 통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No-undercut’ 통제는 어느 한 국가가 특정 품목을 특정 수입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해 수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경우 다른 회원국도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초 거부국과 협의를 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타 회원국의 수출통제 노력 및 실적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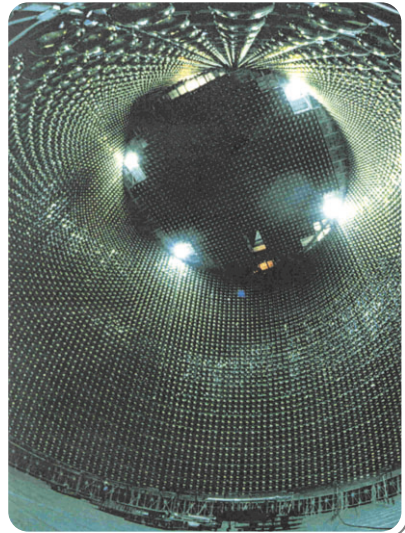
전략물자

전략물자는 무기류 및 그의 제조·개발에 이용 가능한 민·군 겸용 기술이나 '이중용도 물품'을 모두 일컫는 광범위한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군사 전략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로 통용된다. 이 전략물자가 우려국가에 이전될 경우 국제적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거래 시 제한을 받고 있다.

*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2006년 12월)은 전략물자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시대에 따라 그 범위와 의미가 변화되어 왔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적대국의 전쟁 수행 및 지속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자원 및 원자재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적국의 군사능력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첨단산업 및 핵심부품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전략물자'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서 수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물자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그 통제 품목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바세나르협정 (WA : Wassenaar Arrangement)

바세나르협정(WA)은 공산권 붕괴로 해체된 대공산권 수출통제체제 COCOM을 대체하기 위한 후속체제다. 1996년 7월 11~12일 오스트리아 빈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국 대표가 모여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수출통제에 관한 바세나르협정(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을 설립하였다.

WA는 기본설립문서(Initial Elements)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안보와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총회(Plenary) 일반실무그룹회의(GWG) 전문가그룹회의(EG)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매년 개최되는 총회는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와 교환을 도모하고, 우려국가 혹은 사용자 등을 논의하며, 재래식무기와 기술의 불법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가시화하고 있다.

WA 기본설립문서

- ①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의 불법 축적 방지를 위해 그 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 ② 회원국은 국내 입법을 통해 이러한 품목의 이전이 이 체제의 취지에 반하는 군비증강 또는 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 ③ 지역적 상황 또는 한 국가의 행동이 회원국에 심각한 우려가 될 때 재래식무기와 민감한 이중용도 품목의 획득을 막기 위하여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WA는 무기류와 이중용도 품목·기술을 두 축으로 하며, 각기 다른 통제 리스트와 통제 지침을 가지고 있다.

품목별 통제 리스트/통제 지침

- ① 무기류
 - UN 재래식무기 7대 품목 수출허가 사항을 종합, 연 2회 모든 회원국에 통보.
 - 자발적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특정무기류(이중용도 품목 중 무기 지향적인 품목)는 수출허가 거부 사항을 30일 이내 모든 회원국에 통보.
- ②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 신소재, 소재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장비, 레이저 센서, 항법장치, 해양기술, 추진장치의 9가지 카테고리 구성.
 - 민감도에 따라 일반품목(Basic List), 민감품목(Sensitive List), 초민감품목(Very Sensitive List)으로 구분.

또한 이중용도 품목 및 재래식무기를 비회원국으로 이전하거나 수출을 허가 또는 거부한 사실을 6개월마다 모든 참여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신고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보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통제품목의 이전 또는 거부의 결정은 각 회원국의 고유 권한이다.

9·11테러 이후 WA는 협정에서 정한 통제품목이 테러단체나 우려국가에 이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각국 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자는 협의를 하였다. 2005년 총회에서는 휴대용대공무기(MANPADS) 통제이행과 정보교환 범위의 확대, 재래식무기 수출거부 품목의 정기적인 통보, 참여국 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나라는 WA의 회원국으로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WMD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통제 품목 리스트 결정에 참여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군사기술 개발 및 국내 기술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통제 현황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측 개발사업자가 북한과 협력하여 개성 지역에 대규모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성공단 내 우리 측 기업에 대해서도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이 적용된다.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통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하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국내법적 통제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통제다.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상 통일부 장관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외무역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전략물자와 컴퓨터 등이 승인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일부가 대외무역법이 규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하는 것을 승인한 사례는 없다.

다른 하나는 미국이 자국 안보와 WMD 확산방지 등을 위해 미국산 제품 및 기술이 일정부분 이상 포함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미국 국내법(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에 의한 규제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가 10% 이상 포함된 제품을 개성공단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 통신장비 등은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경우 EAR 임시 면제규정을 활용하여 1년 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하고 있다.



쟁거위원회 (ZC : Zangger Committee)

쟁거위원회(ZC)는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3조 2항(NPT 회원국은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핵물질 및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을 이행하기 위한 통제 목록인 'Trigger List' 작성을 목적으로 1974년에 출범하였다. 원래 명칭은 핵확산금지조약 수출국위원회(NPT Exporters Committee)이지만, 스위스의 클로드 쟁거(Claude Zangger)가 주도적으로 활동한 것에 기인하여 쟁거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쟁거위원회의 통제목록이 Trigger List인 이유는 쟁거위원회의 수출허용 전제조건이 IAEA의 안전 조치를 수용하는 것인데, 이 통제목록이 IAEA의 안전조치 적용을 '유발' (trigger)하기 때문이다.

쟁거위원회는 1974년 IAEA문서 INFCIR(Information Circular)/209로 양해각서 A와 B를 발간 하면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두 가지 양해각서는 아래와 같다.

- 양해각서 A
핵물질을 통제하는 규정으로, 핵물질의 모든 수출은 안전조치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NPT 회원국이 아닌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핵물질을 수출 혹은 재이전할 경우 핵폭발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도록 규정.
- 양해각서 B
양해각서 A에서 정의한 평화적 이용, 안전조치, 안전조치를 받는 재이전의 적용을 유발하는 설비품목인 통제품목(Triggerlist)을 규정.

현재 쟁거위원회 회원국들은 NPT 회원국이 아닌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원자력 관련 물질과 장비를 수출하거나 그 허가를 발급할 때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쟁거위원회가 합의한 수출 통제품목은 위원회 설립 초기에 규정한 핵물질과 장비품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세분화하여 농축 방법, 재처리 공장장비, 중수소 생산 공장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쟁거위원회의 주요 통제 대상 품목은 핵원료 물질 또는 특수 핵분열성 물질과 그 물질의 처리·사용·생산을 위해 특별히 설계하거나 만든 장비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 전용품목 리스트에 수록된 물품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IAEA의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통제지침을 갖고 있다.

쟁거위원회는 2001년 국제사회의 협조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외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래로 회원국과 제3국 간 공감대 형성, 활동의 투명성 제고, 핵수출 통제와 비확산 문제에 대한 대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5년마다 개최되는 NPT 평가회의에서 쟁거위원회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핵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을 하고 프랑스·독일이 제3세계 국가와 농축·재처리 시설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핵확산의 우려가 증대되자 NPT 회원국만 가입할 수 있는 쟁거위원회만으로는 효과적인 핵비확산이 어렵다는 인식이 커져 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는 더욱 강력한 핵물질 수출 통제체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결과 1978년 런던에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소련, 일본 등 7개국은 비공개 회의를 갖고 핵이전에 관한 지침인 런던가이드라인(London Guideline-INFCIRC/254)을 채택하면서 핵공급국그룹(NSG)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NSG의 목적은 프랑스 등 쟁거위원회 비참여국들이 핵비확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국제 원자력 거래를 좀더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원자력 전용으로 설계하거나 만든 품목들의 수출에 관한 통제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통제 품목에는 핵원료물질과 특수핵분열성물질, 원자로와 관련 장비, 원자로에 사용되는 비핵물질, 핵 연료의 재처리 시설과 관련 장비, 그리고 상기 품목과 관련된 기술 등이 있다.

최초 통제지침은 제1차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에 서구권 국가로부터 유입된 이중용도 품목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통제지침 2’로 강화되었다. 여기에는 원자력 활동과 관련 없는 민수용이지만 원자력 활동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의 통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원자력 관련 물질 수입국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출품에 대해 IAEA의 안전조치를 적용한다.
- ② 수입품목에 대한 물리적 방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③ 재이전 때에는 최초 공급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사용은 항상 평화적 목적일 것을 서약해야 한다.





호주그룹 (AG : Australia Group)

1984년 유엔 사무총장이 “이란-이라크전쟁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고 보고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화학 및 생물무기 규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5년 호주의 빌 헤이든(Bill Hayden) 외무장관의 제안으로 15개국 대표가 화학물질 수출통제에 관한 정책과 조치들을 공동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1985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짐으로써 호주그룹(AG : Australia Group)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호주가 의장국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호주그룹이라고 부르게 된 이 회의체는 화학·생물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국은 화학·생물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이나 기술의 규제 유무를 협의하고, 합의된 품목을 규제 대상으로 정한다. 이를 각국이 수출허가 정책에 반영하여 수출통제를 실시하도록 하는데, 수출통제 대상 국가는 특정국 혹은 회원국에 한정하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호주그룹이 합의한 규제품목은 아래와 같다.

- ① 화학무기 원재료(화학물질) 63개 품목
- ② 화학무기 제조설비(반응품, 저장용기 등) 11개 품목 및 관련 기술
- ③ 생물무기 관련 생물제(사람·동물·식물에 대한 바이러스·독소 등) 73종
- ④ 생물무기 관련 제조설비 7개 품목

호주그룹은 국제사회에 화학·생물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호주그룹의 역할은 자국의 수출통제 및 테러 관련 정보를 회원국 간에 교환하고 통제리스트를 수시로 수정·보완하여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화학·생물무기 수출을 좀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는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인 로켓이나 무인비행체(UAV : Unmanned Aerial Vehicle)와 관련 부품·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1987년 4월 미국 주도로 서방 7개국 간에 수립한 수출통제체제다. 처음에는 핵무기 운반 미사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3년 1월 이후 모든 대량살상무기 운반용 미사일까지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 12월 현재 총 34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26일에 가입하였다.

MTCR의 통제 대상 품목은 Category-I과 Category-II로 나누어진다. Category-I은 사거리 300km 이상과 탑재중량 500kg 이상의 미사일 완제품, 그 생산시설 및 주요 하부체계 등이다. Category-II는 사거리 300km 이상과 탑재중량 500kg 미만의 미사일 완제품, Category-I에 쓰이는 주요 부품, 하부체계, 생산시설 등이다.

MTCR 회원국은 가입을 통해 우주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국제적 미사일 비확산체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함으로써 국가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자국의 방위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MTCR 가입 현황

2006년 12월 현재

가 입 연 도	가 입 국 가
1987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1990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호주, 덴마크, 스페인, 노르웨이
1991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1992	포르투갈, 스위스, 그리스, 아일랜드
1993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헝가리
1995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
1997	터키
1998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2001	한국
2004	불가리아

제2장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협력



이점이 있다.

최근 국제사회가 미사일 관련 기술 확산을 중요한 안보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006년 MTCR 총회에서 순항미사일 통제를 강화하고 무인비행체 통제는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여 2007년 총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 한·미 미사일 회담

2001년은 우리나라가 미사일과 우주개발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시기다.

1979년 자주적인 미사일 개발 필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는 관련기술 이전 확보를 위해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자율규제 서한’을 전달하였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90년대 초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 신장이 안보위협으로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된 우리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자율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북 미사일 능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180km의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회담의 필요성을 제기, 5년 동안 9차례의 공식회담을 통해 사거리 300km와 탑재중량 500kg까지의 미사일 개발·생산·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협상은 군용미사일과 우주발사체의 자체 개발 및 보유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1995년부터 9차례의 회담을 거쳐 마침내 2001년 1월에 타결을 보게 되었다. 이어서 한국은 2001년 3월에 MTCR에 가입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국제적 비확산 노력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미 미사일 협상 타결과 MTCR 가입은 우리의 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WMD 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관련 물자의 불법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이 주도하고 11개국이 참여하여 출범한 WMD 확산방지구상(PSI)은 2006년 12월 현재 80여개국이 참여한 국가간 협력체로 발전하였다.

국제사회는 2002년 12월 예멘에서 발생한 북한 화물선 서산호 사건이 PSI의 구조, 성격, 참가국 구성 등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산호 사건

미국은 서산호가 WMD 관련 물질을 적재하고 동아시아에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영국·프랑스 등 여러 국가 해군의 도움을 받아 이 화물선을 추적하고 있었음.

서산호가 예멘 부근 해역으로 접근하자 스페인 정부를 통해 승선 검색을 요구, 시멘트로 위장한 화물 사이에서 미사일 부품을 발견함.

이 물품을 미사일 제조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예멘 정부의 약속을 받고 나서 서산호의 항행을 허락함.

PSI는 사무국을 갖추지 않고 이 구상에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협조에 기초한 대확산(Counter-proliferation) 활동이다. 이 구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003년 9월 파리에서 채택된 ‘차단원칙 성명’을 승인하고, 이를 외교적 절차를 통해 미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2006년부터 PSI 관련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정식 참여가 아니라 사안별 협조라고 보아야 한다.



PSI 해상차단훈련 중 검색팀 승선

제2장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협력



PSI 차단원칙 성명

- 단독 또는 국가간 협조를 통해 WMD, 운반수단, 그 관련 물자의 개발·이전 차단을 위한 효과적 조치 강구.
-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한 절차 구축(정보 기밀 유지, 자원·노력의 적절한 배정).
- 필요한 경우 참가국의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 체계 강화.
- 참가국의 국내법 범위에서 기존 국제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차단 방안 이행.
 - WMD 관련 물자의 수송 및 수송지원 금지.
 - 내수·영해·공해에서 피의심 자국 선박에 대한 승선·임검·압류 조치.
 - 피의심 선박에 타국이 승선·임검 조치를 하는 데 대한 동의 방안 검토.
 - 피의심 항공기가 영공을 통과하려 할 경우 검사 목적의 착륙을 지시하고, 관련 물자 압수(영공 통과권 거부).
 - 자국 항구나 공항을 환적지로 사용할 경우 선박·항공기 등을 검사하고 관련 물자 압수.

핵실험에 사용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적재하고 리비아로 향하던 독일 선박 BBC China를 2003년 11월 미국, 독일, 이탈리아가 합동으로 해상에서 차단한 것을 국제사회는 PSI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리비아 정부는 WMD 제조에 필요한 원료나 장치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WMD 관련 실험이나 제조 의사를 포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PSI의 목표는 기존 국제기구나 조약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WMD 관련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WMD 관련 화물을 적재했다는 의혹만으로 선박 국적국의 승인 없이 제3국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차단하거나 각국의 영해를 통과하는 WMD 운송 선박을 차단할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제약을 갖고 있다. 또 성공적 차단(interdiction)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다양한 사안을 처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참여국 간의 정보교환이나 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독립된 공식기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차단 목표인 WMD 관련 물질의 부피가 작아 색출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등이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PSI 합동 차단

미국을 비롯한 주요 참여국들은 PSI 운영상의 미비점 해결과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2004~2005년 미국이 파나마·라이베리아 등 세계 주요 선박 등록국과 쌍무적 승선협정(board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국의 등록선박(flagged ship)에 사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것도 그러한 노력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2005년 10월에는 1988년에 제정된 ‘해상 불법행위 억제 협약(SUA)’에 WMD 관련 물자의 운송을 불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PSI 참여국들은 2003년 9월 파리회의에서 ‘차단원칙 성명’을 채택한 이래 전체회의 및 운용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차단 훈련을 벌여 왔다. 우리나라도 2005년말 PSI와 관련하여 부분 참여와 사안별 협조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3월에는 미국 정부의 운용전문가 그룹이 방한하여 PSI 활동 현황을 소개한 바 있고, 2006년 4월 호주 주관으로 호주 북부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공중차단훈련과 10월 미국 주관으로 바레인 근해에서 실시된 해상 차단 훈련에 정부 참관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WMD 확산 방지를 위한 PSI의 목적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남북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해 나갈 것이다.



물품 검색



컨테이너 안보구상(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 안보구상(CSI)는 미국의 항구로 운반되는 컨테이너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전 세계 주요 항구에서부터 보안검색을 강화하여 위험물질을 탑재한 컨테이너의 운송을 원천봉쇄하는 개념이다.

2001년 1월 미국 국토안보부(DHS : Department of Home Security)는 9·11테러 이후 자발적이며 다자협업체 형태를 띤 수출통제체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국가안보와 무역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테러 방지정책의 일환으로 이 조치를 발표하였다.

CSI는 세계의 30여 개 주요 항구(Maga-port)에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이 상주하면서 화물적하 목록과 세관신고서를 검토하고 X-ray, 방사능 감지장치(radiation detection), 비침투검사(NII, Non-Intrusive Inspection) 등을 이용하여 화물이 미국의 항구로 옮겨지기 이전에 전략물자의 불법 및 밀거래를 색출·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CSI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테러리즘의 잠재적 위험이 의심되는 선적 판별.
- ② 선적 물품이 운송되기 전에 선적지에서 사전검사 실시.
- ③ 첨단 장비를 이용해 위험이 의심되는 선적물을 신속하게 사전검사 실시.
- ④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2002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161개 전 회원국의 항구에서 미국 CSI 방식의 사전통관 검사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협력협정을 체결한 후 2003년 8월 13일 부산항 8부두에 한·미 세관합동사무소를 열고 이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 (SUA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방지협약(SUA)은 1988년 3월 로마에서 열린 ‘항해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가한 76개국의 만장일치로 협약 및 의정서가 채택되고 1992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항해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박 납치 등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는데, 1983년 10월에 벌어진 이탈리아 여객선 Achille Lauro호 피랍사건의 영향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chille Lauro호 피랍사건 개요

- 1985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해방전선을 대표하는 4명이 사이드(Said)로 향하던 이탈리아 여객선 Achille Lauro호를 납치,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 중인 5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의 석방을 요구함.
- 사이드 항에 들어가려던 그들은 입항이 거절되자 유대인계 미국인 리언 클링호퍼(Leon Klinghoffer)를 사살하고 민항기를 이용해 튀니지로 탈출하려 했으나 미국 전투기에 의해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강제 착륙되었음.
-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이탈리아가 이를 거부하는 등 테러리스트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는 유사한 해상 불법 행위자의 처벌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함.

2001년 9·11테러 이후 새로운 양상의 해상 테러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법률위원회는 SUA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논의 과정에서 협약의 성격이

개정된 SUA의 성과

- 신범죄(new offenses) 규정
 - 신범죄 : 선박을 이용한 새로운 양상의 해상 테러 행위를 비롯해 WMD와 그 운반수단 및 관련 물자, 이중용도(dual-use) 물자의 운송 행위.
- 테러와 WMD 운송 혐의 선박에 대한 해상 승선·검색(boarding and search)의 법적 근거 마련.
- 해상 테러와 WMD 운송 범죄 관련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 공조체제 완비.
- 선박 및 플랫폼(대륙붕상 고정식)을 이용한 새로운 양상의 해상 테러와 WMD 확산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2장 WMD 확산 방지를 위한 다자협력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에 관한 것으로 변화된 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의 지지로 개정안이 공식 채택되고, 2005년 10월 최종의정서가 참가국 대표들에 의해 서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SUA 의정서를 IMO 사무국에 제출하고 5월 27일에 SUA 수용을 위한 '선박 및 해상 구조물에 대한 위해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한국에 대한 SUA 의정서가 발효되었다. 2006년 12월 현재 회원국은 115개국이며,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다.



국제해사기구 회의 모습